

기자회견문

0. 앞서 오현정 변호사가 발언한 바와 같이, 현재 로스쿨제도는 그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로스쿨 재학생 시절 참여했던 국제인권모의재판은 로스쿨 지원자가 없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로스쿨 재학 중 경험이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만을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에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자 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이란 인원통제 아닌 응시자가 객관적으로 최소한의 자격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론 지금 시대에 맞는 변호사 자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건지, 시험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연구와 제도화가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법령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병역 기간 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한다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예외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넘어 응시금지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3. 로스쿨 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고, 법치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

족합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 그 취지인 만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시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로스쿨 교육의 내용’과 ‘변호사 자격의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법전원법(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학교육위원회를 로스쿨과 정부, 실무가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쪽으로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교육을 로스쿨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각 로스쿨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되, 외부에서 각 로스쿨 교육을 평가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 평가기구의 설치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문제를 가지고 그 입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는 종전의 법조인 양성 제도인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의 한계와 폐단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숙고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적 대안이 마련됩니다.

장기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이번주 금요일에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도 도입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합격점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한 점, 면과락자 불합율이 30배 이상 증가한 점, 현행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될수록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